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2
----------	-----

제출년월일 : 2016.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2016.3.31부터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출산 관련 서비스의 혜택을 통합신청서에 의해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축하금의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함(안 제3조)

나. 종전의 지원신청 서식을 통합신청서로 변경 함(안 제5조,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6.6.13.~7.4.) 결과,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3) 규제심사 : 비규제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미반영)

개선의견	반영결과
제3조(지원대상) 제1항 '신생아, 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u>'부'또는 '모'로 한다.</u>	제3조(지원대상) 제1항 '신생아, 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u>부모로 한다.</u>

5) 법제심사 : 원안동의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2년 전부터”를 “2년 전부터 계속하여”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제5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 중 “별지 제3호”를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2호 서식”과”로, “신청대장과 지급대장”을 “지급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거주기간이 미 도래한 사람은 거주기간 도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축하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3. (생략)

제8조(대장 등 비치) 군수와 읍·면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의 출산축하금 신청대장과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한다. -----

④ -----

1.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삭제>

3. (현행과 같음)

제8조(대장 등 비치) -----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2호 서식”과-- 지급대장-----.

신청 시 제출 서류(공통)	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1.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2.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현금지원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3.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
신청하는 곳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 센터

안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내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출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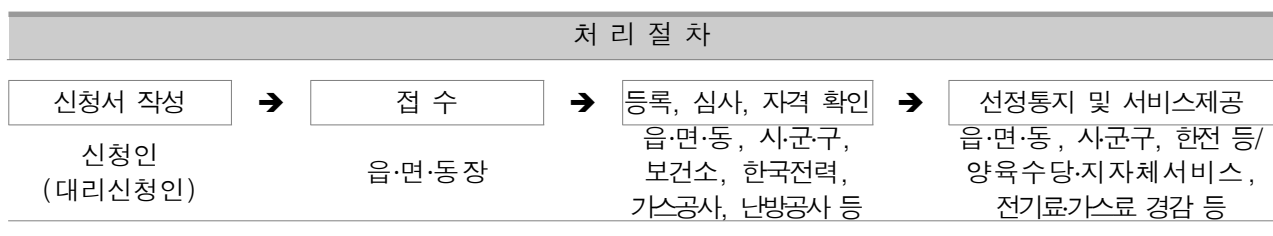
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 관련법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소관기관)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소득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 기관,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 제공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하는 항목은 고유식별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경감서비스처리에 필요한 고객센터 등을 포함하며, 상세 내용은 서비스별 개인정보이용·활용동의 서식 참조)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전, 도시가스회사, 지역난방공사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 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 및 공급지역에 따라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년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 출산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관계 법령 발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행정부예규 제48조(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관한 규정)

제4조(통합처리) 통합처리를 하는 때에는 출생신고서와는 별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읍면동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없으므로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거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연락처	(033) 330 - 2150